의 안 번 호	1630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8.(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2020. 5. 28.(목)

다. 위원회 심사일자: 2020. 6. 9.(화)

2. 제안이유

일자리창출, 첨단산업단지, 미래신산업 육성 등의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 주민만족 향상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과 신설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서개편

1) 국 신설: 일자리경제국(안 제3조)

2) 국 명칭변경: 복지경제국 → 복지환경국(안 8조)

3) 과 신설: 주민소통과(안 제7조)

4) 부서 폐지: 청렴감사관

5) 과 명칭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 일자리창출실 → 일자리기업과
- 경제산업과 → 경제진흥과
- 회계정보과 → 회계과
- 행정자치과 → 총무과

6) 과 직제변경(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일자리경제국) ① 일자리기업과 ② 경제진흥과 ③ 회계과 ④ 세무1과 ⑤ 세무2과
- (주민자치국) ① 행정자치과 ② 문화관광과 ③ 혁신교육과 ④ 회계정보과 ⑤ 세무1과 ⑥ 세무2과 ⑦ 민원지적과
  → (주민자치국) ① 총무과 ② 주민소통과 ③ 문화관광과 ④ 혁신교육과 ⑤ 교통과 ⑥ 민원지적과
- (복지경제국) ① 주민생활지원과 ② 노인장애인과 ③ 여성가족과 ④ 경제산업과 ⑤ 환경위생과 ⑥ 환경미화과
  → (복지환경국) ① 주민생활지원과 ② 노인장애인과 ③ 여성가족과 ④ 환경위생과 ⑤ 환경미화과
- (안전도시국) ① 안전총괄과 ② 건설과 ③ 도시과 ④ 교통과 ⑤ 건축과 ⑥ 공원녹지과 ⑦ 시설지원과
  → (안전도시국) ① 안전총괄과 ② 건설과 ③ 도시과 ④ 건축과 ⑤ 공원녹지과 ⑥ 시설지원과

나. 분장사무 조정

1) 일자리창출실: 삭제

2) 청렴감사관: 삭제

3) 일자리경제국(안 제6조)

가)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

나) 경제정책,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

다)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세무, 시세, 구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마) 지방소득세, 징수, 세외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바) 도시재생 등에 관한사항 : 삭제

4) 주민자치국(안 제7조)

가) 총무, 인사,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 구민협력, 청렴감사,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다)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바) 민원1회방문처리제,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 지적공부관리,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

5) 복지환경국(안 제8조)

가)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다) 여성(외국인), 청소년,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중위생, 식품위생,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

마) 환경보전대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바) 경제정책, 산업진흥,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사항: 삭제

6) 안전도시국(안 제9조)

가)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통신관제,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나)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하수, 오수·분뇨 등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도시 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라)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 건축·주택행정,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심사·감독·준공), 문화재·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

4.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4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13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 주민만족 향상과 주민소통을 위한 과 및 팀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사항

○ 「지방자치법」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는 사항을 그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광역시와 연계성, 타 구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였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그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능률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

-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 “국”과 “과”는 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련,

- “국” 및 “과”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일 때 “실·국”에 관하여만 수 제한을 두었으며 “과”에 대하여는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의 불부합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수요 반영, 주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및 광역시의 정책방향, 구정 운영방향, 구청장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 집행기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 독자성 · 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